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2021. 12.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1-138
----------	--------

2021. 12. 9.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김종선 의원 외 5명
- 나. 제 안 일 : 2021. 11. 19.
- 다. 회 부 일 : 2021. 11. 22.

2. 제안이유

조례 문구 중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중복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문의 제목 변경(안 제3조)
 - “제3조(조례의 범위)” 를 “제3조(적용 범위)” 로 변경
- 나. 불필요한 중복 표현 삭제 정비(안 제6조제1항)
 - 제3호, 제7호의 “구 관할 구역” 삭제
- 다. 조문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8조제1항)
 - “구민” 을 “누구든지” 로 변경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

1) 입법예고: 2021. 11. 19.~ 11. 24.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및 조문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문구의 간결성을 도모하고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되는 오류 등을 바로잡아 원래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는 등 조례로서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어 법령문의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는 자치법규 입안 작성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되는 문장 등은 길고 복잡하므로 원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하려는 것임.
- 따라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상위법령에 위반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